

광주지방법원 2023. 9. 13 선고 2022가단51855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현

피 고 주식회사 B (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)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, 현길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동성

변 론 종 결 2023. 7. 19.

판 결 선 고 2023. 9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D과 피고는 2021. 3. 16.경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.

차 용 증

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일금 일억 원정을 차용1) 함에 있어, 2021. 3. 16. 차용하여 차

입금은 일시에 2021. 4. 9.까지 공사비로 지급받아서 입금 처리기로 확인 각서한다.

위 금액 차용금 일억 원정에 대해서 주식회사 D이 차용한 금액을 연대하여 C 주식회사에
서 보증하여 처리기로 약정하고 확인 각서기로 한다.

차용인 E (서명)

2021. 3. 16.

주식회사 D (인)

C 주식회사 (인)

나. 원고는 2021. 3. 16.경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주식회사 D은 2021. 3. 16.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, 피고는 이를
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
2022. 6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
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- 1) 피고는, F(또는 G)이 2021. 5.경 원고에게 89,821,200원의 수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E의 원고에 대한 5,000만 원 채권으로 나머지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.
- 2)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거나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광주지방법원 2023. 8. 9. 선고 2022고단3343 판결 참조).
- 3)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희석

- 1) ‘대여’의 오기로 보인다.